

同姓不婚制度의 綜合的 考究

金 容 漢

(건국대학교 정법대학교수)

※ 이 논설은 법무자료 제55집

「家族法の 諸問題」(1984년 12월 발행)

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.

1986. 11. .

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
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-427

전화 794 4560

김 용 한 교수 약력

- 법무부 정책자문위원

同姓不婚制度의 綜合的 考究

民國 第 809 條 1 項은 「同姓同本인 血族 사이에서는 結婚하지 못한다」고 規定하고, 이에 違反한 結婚 建國大學校 政法大學 教授 金 容 漢 가 漢 事者 사이에 直系血族, 8 寸以內的 結婚을 無效로 하고, 2 款의 同姓同本인 사이의 結婚은 第 816 條와 第 820 條의 規定에 따라서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.

I. 序 言	1
II. 同姓不婚의 史的素描	3
III. 現行規定의 成立과 改正論議	7
IV. 解釋論의 制限과 實務의 狀況	13
V. 同姓禁婚制度의 實證의 批判	18
VI. 結 論	44